

의안 번호	1172	【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11. 12.(목)
- 나. 제출자 : 서경환 의원 외 6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11. 12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11. 24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인성교육진흥법」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육성과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라.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구청장은 인성교육 관련 실태조사, 연구용역 등 실시, 전문 인력 양성 등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함
- 마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- 구청장은 국가 종합계획 및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의 범위에서

울산

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수 있음

바. 인성교육 실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·덕목과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하며,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음

사.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체계적·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

인력을 양성해야 하며, 관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

-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위탁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

아. 프로그램 등 개발·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·홍보해야 함

4. 관련법령

- 「인성교육진흥법」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15. 10. 29. ~ 2015. 11. 6.(의견 없었음)

6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(안)은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. 7. 21 시행됨에

따라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
-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